

조세 · 재정 BRIEF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09. 30(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I 논의 배경

- 실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본 조달의 역할에 충실하던 과거의 금융이 오늘날에는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실물경제와 무관하게 무단히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음
 - 이러한 '자기증식적'인 금융의 성격은 증식된 자본의 축적을 통하여 금융자본주의로 발현됨
 - 금융산업은 자가수익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파생금융상품임
 - 다양한 종류의 파생금융상품은 여러 가지 결합과정을 거쳐서 더욱 복잡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음

- 진화하는 금융산업에 따라 세제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인바, 거시적으로 산업으로서의 금융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과세부담은 얼마가 되어야 할 것인가¹⁾하는 문제와 미시적으로 복잡다기해진 금융산업의 변화에 따른 세제의 꼬임 현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됨
 - 본고는 후자의 문제에 대하여 그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시도임

1)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등 금융산업이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적다는 것이 부각되고 있음

2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상품 또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세법상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만 해당되고, 양도차익은 거의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세제가 매우 복잡
 -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되고,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되고 있으나, 과세대상은 주로 부동산 양도소득이며, 주식양도차익과 같은 금융소득은 대주주 등 일부만 과세되고 있음
 - 한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소득은 주로 배당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현물주식 시장에서 양도차익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합투자기구의 수입 가운데 주식양도차익에서 발생하는 수입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 파생상품투자로부터의 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있는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복잡다기함

- 이렇게 복잡다기한 금융소득세제를 형평성, 중립성, 단순성의 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체계로 바꿀 수 없을까 하는 것이 본고의 출발점임
 - 이를 위하여 모든 금융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을 제안하고, 금융투자소득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금융세제의 정비 방안을 제시함

II

우리나라의 금융세제 현황과 문제점²⁾

- 금융상품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과세하는 한편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과세하고 있음
 - 특정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도 하면서 금융세제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

-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지만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융상품 과세제도는 수평적 형평성이 결여되어

2) 이상엽(2013) 참조

있음

- 같은 금융자산에 투자하더라도 금융상품간의 과세상 취급이 상이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 예를 들어, 채권의 직접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에는 이자소득과 매매차익이 있는데 이자소득에만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음
 - 반면, 간접투자인 펀드의 경우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채권의 매매차익을 모두 통산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하는바, 직접투자가 간접투자에 비해 세제상 우대를 받고 있음

□ <표 1>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다른 금융상품으로 분류가 되어 다른 과세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음

<표 1> 주가연계증권(ELS)과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비교

| 투자 상품 | 주가연계증권 (ELS) | 주가연계펀드 (ELF) | 주가연계신탁 (ELT) | ELS 수익을 복제하는 특정금전신탁 | 금융공학 펀드 (RCF 등) |
|---------|---------------------------|-----------------------|--------------|-------------------------|-----------------------|
| 법적 형태 | 파생결합증권 | 집합투자 기구 | 투자신탁 | 특정금전신탁 | 집합투자 기구 |
| 주 투자 대상 | 채권, 파생상품 (선물, 옵션) | ELS, 채권 | ELS | 채권, 옵션 | 주식,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
| 발생 소득 | 채권이자, 채권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매매차익 | ELS의 소득, 채권이자, 채권매매차익 | ELS의 소득 | 채권이자, 채권매매차익, 파생상품 매매차익 | 배당, 주식매매차익, 파생상품 매매차익 |
| 과세 대상 | 모든 손익을 통산 | 모든 손익을 통산 | ELS의 소득 | 채권이자 | 배당 |
| 세목 |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세 | 이자소득세 | 배당소득세 |
| 종합 과세 | 종합과세 | 종합과세 | 종합과세 | 종합과세 | 종합과세 |

□ 해외주식 관련 투자 세제도 금융상품간 과세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임

-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

4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소득세가 부과되며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분류과세됨
- 반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역·내외 해외주식형 펀드와 역내 해외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해외주식의 배당소득과 매매차익 등을 통산하여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임
- 역외 해외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해외주식의 직접투자처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표 2> 해외주식 투자와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비교

| 투자상품 | 해외주식 | 역내 해외주식형 펀드 | 역외 해외주식형 펀드 | 역내 해외주식형 ETF | 역외 해외주식형 ETF |
|------|-------------------------|-------------------|-------------------|--------------------|-------------------------|
| 발생소득 | 배당, 매매차익 | 배당, 매매차익 | 배당, 매매차익 | 분배금, 매매차익 | 분배금, 매매차익 |
| 과세대상 | 소득에 따라 구분 | 전체 소득 | 전체 소득 | 분배금, 매매차익 | 소득에 따라 구분 |
| 세목 |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
| 종합과세 | 배당소득에 한함 | 종합과세 | 종합과세 | 종합과세 | 배당소득에 한함 |
| 기타 |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 | | | |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 |

- 금융자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비과세되거나 분류 과세되는 금융상품³⁾들을 이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거나 세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는 등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있음
- 10년 이상 유지한 월납입식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절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기회를 제공하여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예임
-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과세 재형저축의 가입 대상 소득이나 한도와 비교해 볼 때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음

3) 2014년 현재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는 가입기간이 종료된 것을 제외하면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 14개 항목과 소득세법상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이 있음

- 또한 현실적으로 모든 금융관련 소득을 이자나 배당, 또는 양도차익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음
 - 합성상품(hybrid)을 통하여 양도차익을 이자와 같이 고정적 금액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소득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 반대로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그 수익원에 중점을 두어 양도차익으로 성격을 바꾸는 것도 가능
 - 즉 금융관련 소득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과세대상을 비과세대상으로, 비과세대상을 과세대상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

-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
 - 좁은 의미의 금융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나 배당과 확장된 의미의 금융소득이 포함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이 다르기 때문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과세를 일원화하고 제도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필요

- 양도차익과세제도를 도입한 다음 단계의 문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포함여부임
 - 이자, 배당뿐 아니라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경우, 이런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현행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틀 안에 집어넣을 것인가?
 - 형평성의 논리에 따른다면 종합과세의 틀 안에 집어넣는 것이 타당하나,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 속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하나로 묶고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음

III

해외의 이원적 소득 세제

-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의 대표적인 나라들은 북구 3국임
 - 반면 독일과 일본은 그들 실정에 맞게 북구 3국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실시하고 있음

- 스웨덴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외환 및 금융자유화가 급진전되는 현상을 보임에 따라, 자본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는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⁴⁾
 - 각종 공제제도를 축소하고 세율을 낮추어 자본소득을 근로소득과 별도로 30%의 단일세율로 과세
 - 스웨덴은 세액공제를 통해 자본소득의 손실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부분 통산도 허용
 - 지급이자도 자본소득에서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자본손실도 원칙적으로 100% 공제가 가능하나, 특정 경우에는 70%까지만 공제 허용

-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일반소득에 대해 2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던 노르웨이도 1992년부터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소득세 이외에 사회보장세와 개인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사업소득은 개인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는데 자본소득으로 분류된 사업소득은 28%의 일반소득세율을 적용

- 핀란드는 1993년에 스웨덴, 노르웨이에 이어,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한 국가로 개인소득을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
 -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당시 개인의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8% 세율을 적용하였으며, 2013년부터 30%로 과세
 -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0~32%의 초과누진세율구조를 가진 국세와 16~21%의 지방세와 1~2%의 교회세를 부과하는 구조였으나, 2013년부터 누진세율구조로서 6단계로 나누어 0~31.75%의 국세와 15~20%의 지방세와 1~2%의 교회세(Helsinki 1%)를 부과

- 북유럽국가들이 도입한 이원적 소득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도입 초기와는 다른 형태의 제도로 변하였는데,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법임

4) 안종석·전병목(2007) 참조

-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 초기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퓨테이션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문제를 완전히 조정하였으나,
 -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자본소득으로의 조세회피 유인이 됨에 따라 폐지하거나, 부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
 - 또한 원칙적으로 이원적 소득세제하에서는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자본손실 및 자본비용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하나, 실제로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국가는 없었으며, 심지어 노르웨이는 일반 소득 과세단계에서 완전 통산을 허용
- 독일은 일부 자산의 단기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여 오다가, 2009년 독일식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한 이후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하는 체계를 유지⁵⁾
- 북구국가들이 법인소득, 금융소득, 양도차익, 임대소득, 사업소득 중 자본기여분을 자본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리과세하는데 비하여, 독일은 법인세는 별도로 징수하고,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
 - 발행 주식 1% 미만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과거에 비과세 처리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파생상품도 원칙적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한 반면, 부동산을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제외
 - 2009년부터 일반소득에 대해서는 14~45%의 누진소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이자,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은 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25%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이원적 소득세체계를 갖추
- 소규모 투자소득자에 대해선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본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소득세 세율이 25% 이하가 적용되는 자는 신고에 의해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
- 세무당국은 종합과세를 선택한 납세자가 불리한 경우에는 자본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26.375%로 원천징수⁶⁾

5) 오윤(2012) 참조

6)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financial_securities/kabu04.htm

8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자본손실은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손실상계가 가능하고, 이월공제도 가능하며, 증권양도손실은 증권양도차익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도 상계가 가능
- 2009년 1월 1일부터 금융비용, 계좌관리 비용 등 투자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연간 1인당 801유로까지 일괄공제

<표 3> 북유럽국가들의 이원적 소득세제 개편 당시 소득세제 비교

| | 스웨덴 | 핀란드 | 노르웨이 | 독일 |
|-----------|--|--|---|---|
| 근로소득 | 국세 0, 20, 25% 지방세평균 31%(2003년 28.9~33.72%) | 국세 0~35% 지방세평균 18%(2003년 15.5~20%) | 일반소득: 국세, 지방세에서 28% 개인소득: 국세가 0~19.5% 추가 지방세평균 18%(2002년) | 0~45% |
| 자본소득 | 30%(국세만) | 29%(국세만) | 28% | 25%(연대부가세 5.5% 별도) : 26.375%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중 납 세자가 선택가능) |
| 이자소득 | 원천징수 있음 | 원천징수 있음 | 원천징수 없음 | |
| 배당소득 | 조정 없음 원천징수 있음 | 원천징수 있음 | 완전 조정 있음(임퓌테이션), 원천징수 있음 | |
| 주식 양도익 | 자본소득세율로 과세(실현시) | 자본소득세율로 과세(실현시) | 자본소득세율로 과세(실현시) | 자본소득세율로 과세 |
| 양도손 취급 | 기타 자본소득으로부터 공제가능 (순양도손실의 70%) 손실의 이 월은 불가 | 동종 소득으로부터만 공제가능 손실 이월가능(3년간) | 다른 자본소득으로부터 공제가능 | 다른 자본소득과만 손실상계 |
| 이중과세 | 조정 없음 | 조정 없음 | RISK방식으로 조정 | 조정 없음 |
| 순손실 | 근로소득과 실질적으로 통산 가능 (30%의 세액공제) | 근로소득과 실질적으로 통산가능 (29%의 세액공제) | 근로소득과의 통산 가능 (일반소득 내에서의 통산) 10년간 이월가능 | 자본손실이 있는 경우 이월 가능하되, 자본이득에 대해서 만 상계 가능 |
| 법인세율 | 28% | 29% | 28% | 15% ¹⁾ |

주: 1) 2008년 이전에는 25%이었으나 2007년 8월 27일 법 개정으로 2008년 이후에는 15% 적용
 자료: 日本 經濟産業省(2004.4.30) 참조 작성, 독일은 별도 정리

- 일본은 거품경제 이후 경기침체와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저축률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고, 가계금융자산의 대부분이 예·적금이며, 주식이나 주식투자신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낮은 수준이었음
 - 이에 일본 정부는 저축으로부터 투자라는 구조개혁하에 금융소득과세 일원화를 제시⁷⁾
 - 금융상품을 각각의 필요에 의해 투자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이들 금융상품에 대한 손익통산의 범위를 가능한 넓게 적용
 - 과세의 중립성 및 간소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의 상이한 금융상품간 과세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금융소득별로 다른 세부담 격차를 줄임

- 일본은 2001년에 유가증권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26%의 세율을 부과하는 신고분리과세로 일원화하려고 하였으나,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2년 후인 2003년부터 신고분리과세로 일원화하여 양도차익에 과세⁸⁾
 - 개인의 경우, 주가지수 선물·옵션거래로 인한 이익은 2003년까지는 잡소득으로 간주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신고분리과세하는 것으로 변경
 - 이자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하고 배당소득은 2009년까지 상장주식 배당에 대한 20% 신고분리과세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013년 귀속분부터 종합신고를 통해 배당공제를 허용
 - 또한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신고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다른 종류의 소득과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음
 - 손익통산 후 손익과 순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3년간의 이월공제를 인정

7) 일본 세제조사회 금융소위원회, 「금융소득과세의 일원화에 대한 기본방향」, 2004. 6.15. 참조

8) 2003년 1월 1일 이후 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 우대 세율 10%(소득세 7%, 주민세 3%)로 과세하는 특례 조치 도입

<표 4>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구체적인 내용(2004.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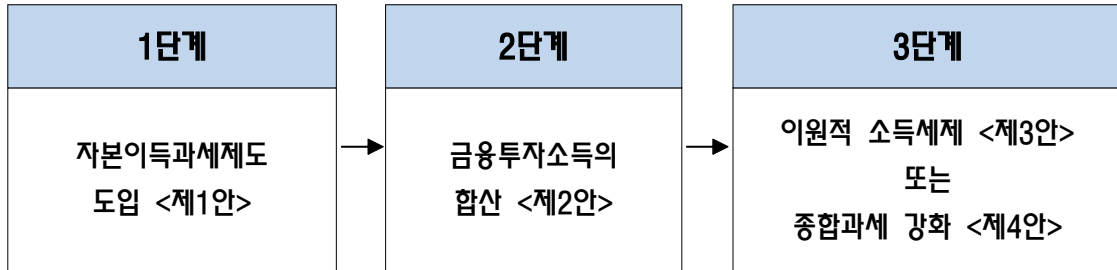
| | 내 용 |
|-------------------------|---|
| 과세방식의 균등화 (20% 분리과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주 이외 상장주식의 배당, 공모주식의 수익분배금 (현행: 종합과세가 원칙) - 공사채, 공사채투신의 양도이익 (현행: 양도비과세, 양도손실은 없는 것으로 간주) - 외화예금의 환차익 (현행: 잡소득으로 종합과세) - 금융소득 이외의 보험수익 (현행: 일시소득/잡소득으로 종합과세) |
| 손익통산 범위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으로부터 투자로”라는 정책적 요구에 따라 주식양도손실과 손익통산의 인정 범위에 이자소득도 포함 ① 주식양도손익과 공사채 양도손실 ② 상장주식의 배당과 양도손실, 공모주식투자의 수익분배금과 양도손실 ③ 주식양도손실과 이자소득 |
| 납세환경의 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익통산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이익과 손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음 - 이때 세무당국은 번호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신고서 내용과 배당 등 지불자로부터 제출한 지불조서 내용을 검토함 |

자료: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financial_securities/n12.htm

IV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방안

- 이자·배당 등 현재 정의되고 있는 금융소득이외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단순하고 일관성 있는 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 제도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이러한 전제하에 모든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 방안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제시함
 - 제1단계로 현재 비과세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과도기적으로 도입하고,
 - 제2단계에서는 이자·배당소득과 함께 자본이득을 모두 함께 묶어서 현행의 틀 안에서 과세함
 -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원적 소득과세제도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선택

[그림 1] 단계적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



1. 제1단계: 자본이득과세 도입

-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도입의 첫 단계는 금융소득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제도의 도입

| | |
|------------|---|
| 제1안 |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 과세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
|------------|---|

- <제1안>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틀을 유지하되, 새로 과세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 자본이득에 대하여 새롭게 과세가 되는 만큼, 분리과세를 통하여 초기에 세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
 -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며,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 자본이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누진적인 세부담을 지지 않는 만큼 현행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인 14%보다 높은 20%의 세율을 적용
- 이 방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과도기적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임

- 그러나 이자·배당과 자본이득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앞서 지적한 현행 금융세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도 어려움
- 동 방안은 자본양도차익과세제도를 도입하는 초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임

| | |
|--------------|--|
| 제1-1안 |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 과세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전액 분리과세하는 방안 |
|--------------|--|

- <제1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1-1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즉 현행 체제대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여부를 결정하고, 새로 과세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전액 분리과세를 허용
 - 이 방안은 <제1안>에 비하여 소득 종류에 따른 조세의 중립성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으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의 경우에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본이득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은 남음
 - 자본이득에 대하여 전액 분리과세하는 방안은 과도기적으로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도한 우대세제라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음

2. 제2단계: 현행 제도하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확대

- 제1단계의 과도기적인 단계를 거쳐서 제2단계는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틀 안에서 금융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확대하는 것임

| | |
|------------|---|
| 제2안 |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틀을 유지하면서 금융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확대하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소득 2천만원 미만 -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 금융투자소득 2천만원 이상 - 종합과세(누진세율) |
|------------|---|

14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도 이자나 배당소득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과세하는 방안
 - 현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자·배당·자본이득을 하나의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을 수 있는 장점
 - 동일한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간 조세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음

3. 제3단계: 이원적 소득세제 vs 종합과세의 강화

- 금융투자소득과세제도 도입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 또는 종합과세의 강화라는 두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
 - <제3안>은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 방안이고, <제4안>은 종합과세의 강화방안

| | |
|------------|--|
| 제3안 |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폐지하고, 이원적 소득세제로 전환하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투자소득을 분류과세하여 단일세율 적용(20~30%)▶ 근로/사업소득 등은 현재와 같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 |
|------------|--|

- <제3안>은 현행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이원적 소득세제로 전환하는 방안, 즉 지금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었던 이자·배당소득을 자본이득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이를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 복귀 여러 나라의 세율을 참조하면 20~30% 정도의 단일세율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근로/사업소득 등은 현재와 같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

| | |
|--------------|---|
| 제3-1안 | <p><제3안>과 동일하나 금융투자소득에 2단계 누진제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소득을 분류과세하여 2단계 누진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소득 2천만원 미만(세율 14~20%) - 금융투자소득 2천만원 이상(세율 20~30%) ▶ 근로/사업소득 등은 현재와 같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 |
|--------------|---|

- <제3-1안>은 복유립의 이원적 소득과세와 종합소득과세의 복합적 형태
 - 이 방안은 이원적 소득과세제도가 지니고 있는 장점을 유지하면서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 즉 금융투자소득을 근로/사업소득 등과 분리하여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 이 방안이 <제3안>과 다른 점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점인데, 이를 통하여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음

- 이 방안에서는 어떻게 세율구조를 결정하느냐가 핵심
 -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이자, 배당, 자본이득 등 금융투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금융투자소득간 조세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금융세제를 단순화하고 이원적 소득과세제도가 지니고 있는 수직적 형평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

- 한편, 이 경우에는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2천만원 기준이나 14%의 세율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음
 - 세수 중립적인 측면에서 금액기준을 다소 상향 조정하고, 분류과세를 허용하는 만큼 세율도 14%, 20% 대신에 각각 14~20%, 20~30%로 하여 복구의 세율에 근접한 세율 수준을 정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을 보면 현행 제도하에서 1,200만원 이하의 금융투자소득만 있는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기본공제의 허용을 통하여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 | |
|--------------|---|
| 제3-2안 | <제3-1안>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2단계 누진제를 근로/사업소득 등과 동일한 단계의 누진제 적용 |
|--------------|---|

- <제3-1안>과 <제3-2안>과의 차이점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2단계 누진세율체계를 근로/사업소득 등에 부과하는 다단계 누진세율로 바꾸는 방안임
 - 금융투자소득을 분류과세함으로써 현재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폐지하되, 금융투자소득에도 근로/사업소득 등과 동일한 다단계 누진세율제도를 도입
 - 이 방식은 현행 부동산 양도차익과세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자본이득과 근로소득간의 조세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수직적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음

| | |
|------------|---|
| 제4안 |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으로써 누진과세를 적용하되, 장기투자소득 등 일부 소득에 대하여 예외를 두는 방안 |
|------------|---|

- <제4안>은 이원적 소득세제에 대한 대체안으로서 종합과세의 강화방안임
 - 이자·배당·자본이득 등 금융투자소득을 누진 과세하되, 1년 이상 유지하는 예금이나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장기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
 - 이 방안은 궁극적으로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V **맺는말**

-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체계하에서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세제는 일관성

- 이 없고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
 - 따라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및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과세하고,
 - 점진적으로 3단계를 걸쳐 이원적 소득세제로 가거나, 아니면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 제1단계로 제시된 <제1안>은 현행의 체제하에서 가장 변화가 적은 과도기적인 방안인데, 이 경우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현재의 문제점이 그대로 남음
-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분리과세 형태로 도입
 -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
- 제2단계에서 제시하는 <제2안>은 현행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자와 배당으로 구성되는 금융소득을 자본이득을 포함하는 금융투자소득으로 확대하는 방안
- 동 방안은 일단 현행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틀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제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금융투자소득간의 조세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마지막 제3단계에서는 이원적 소득과세제도로 가든지 아니면 종합과세제도를 강화하든지 두 가지 방안 중에 선택을 하여야 함
- 이원적 소득세제는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틀을 버리고,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의 이원적 소득과세제도 중의 하나로 전환하는 것임
 - 이원적 소득세제에 대한 대체안으로서 <제4안>은 궁극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제도조차 정착되어있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제3안>이나 <제4안>은 보다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18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제3안>을 선택할 것인가 <제4안>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상대적인 가중치를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철학적인 문제와도 연관됨
 - 현실적으로 효율성이나 형평성만을 전적으로 고려한 제도는 생각하기 힘들며, 결국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는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

참고문헌

안종석 · 전병목, 『자본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연구: DIT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

오윤, 「자본이득과세제도 개선방안」, 『조세학술논문집』, 제28집 제2호, 2012.

이상엽,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정포럼』, 제203호, 한국조세연구원, 2013. 5.

日本 經濟産業省, 「産業金融機能強化のための金融所得課税のあり方に關する検討小委員會報告書(案)」, 2004. 4. 30.

日本 稅制調査會 金融小委員會, 「金融所得課税の一元化に關する基本方向」, 2004. 6. 15.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r.nts.go.kr>)

미국국세청 홈페이지(<http://www.irs.gov>)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financial_securities/n12.htm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financial_securities/kabu04.htm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financial_securities/risi02.htm

작성자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02-2186-2120)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02-2186-2257)